파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7호

2025년 제3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도 제3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 고
합 계			4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행정)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채용일로부터 1년	1명	■ 불법주정차 단속행정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지원 ■ 통행불편 민원상담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업무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0시간)		1명	■ 불법광고물 현장 정비 ■ 국민신문고 민원 현장처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용차량 관리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 고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채용일 로부터 1년	1명	■ 치매조기검진 ■ 대상자 내소프로그램 운영 ■ 인식개선교육 ■ 치매환자 자원연계	

※ 최초계약 1년 이후, 사업의 계속성 및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2.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기준

※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법률」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연령・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함(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또한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 명시 하여야 함)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행정)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불법주정차(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업무 수행경력 ※ 우대사항 -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전산장비 활용능력 우수자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분야 근무 경력 ※ 우대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유사한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자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 관련 교육 이수자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0시간)	■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및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옥외광고업 자격증 보유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의 간호사 관련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 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정

- 「상·중·하」로 평정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서류 미제출자,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재공고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25. 9. 5.(금) ~ 2025. 9. 15.(월)

○ 응시원서 접수 : **2025. 9. 11.(목) 09:00 ~ 2025. 9. 15.(월) 18:00**

※ 마지막 날 몰림 현상이 있으므로 **가급적 2025. 9. 12.(금) 전까지 접수 요망**

○ 접 수 처

- 방문접수 :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등기우편 접수 : 파주시 시청로 50 (우10932)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 접수기간 내 **민원여권과에 응시수수료 납입 후**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9급(마급):5천원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응시수수료 접수 당일 업무시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반환**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마감일 18:00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확인을 위해 발송 후 인사팀 (☎031-940-4126) 확인전화 필수**
- 응시수수료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원활한 서류심사 진행을 위하여 우편접수는 2025. 9. 12.(금)까지 신청 요망

- 우편봉투 겉면 **'2025년 제3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5. 9. 25.(목) 예정

○ 면접시험 : 2025. 10. 24.(금)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025. 10. 28.(수)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재공고) 및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일은 최종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분야별 발령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9급(마급) 5천원 - (방문접수)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원본 제출과 별도로 mcr0724@korea.kr로 **한글파일본 반드시 전송**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분량 A4 용지 3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분량(겉표지, 목차 제외)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해당 없는 항목 삭제)	
7.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 : 학사부터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8.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발행기관 직인 필수)**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위 사항(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기재 서명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 **팩스, 이메일로 받은 증명서 등의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불인정**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 명시하여 제출)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위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10.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원본 지참 필수**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 금지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불가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기재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보수 및 복무

○ 보수 (연봉)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능력과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

분 야	직 급	연봉액 (하한액)	근무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행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7,041천원	주35시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6,579천원	주35시간
불법광고물 정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2,782천원	주30시간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7,504천원	주35시간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 「지방공무원법」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적용

○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별도

9.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 확인 가능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부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사항입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됩니다. (※영리업무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불법광고물 정비(단속행정)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	☎ 031-940-5963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 031-940-5325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 031-940-5533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	☎ 031-820-7334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채용공고란에 공고